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3
------	------

2021. 09. 0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김기덕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경영안정과 지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개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명칭의 표창을 수여하여 시정에 대한 민관협력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소상공인 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근거 명확화

-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와 개별 조례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이나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되며 표창 유형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음.

< 표창 유형별 수여대상 >

표창유형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대상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사·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 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u>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u>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민품양육 등 <u>시민화합</u>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u>개인 및 단체</u>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u>순직 공무원</u>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u>공무원</u> 등과 <u>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u>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u>공무원</u> 등과 <u>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u>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u>개인 및 단체</u>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u>시민복지증진</u>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u>개인 및 단체</u>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이나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가능

-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경영안정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는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해 왔음.
-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2,142건(민간인 : 17,287건, 공무원 : 14,855건)의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경우는 53건임.
- 표창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개별조례에 표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협력과 공로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김기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정태, 김정환,
봉양순, 서윤기, 송명화,
송정빈,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태성, 장인홍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표창)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3조의2(표창) 시장은 소상공인</u> <u>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u> <u>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u> <u>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u> <u>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u> <u>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u> <u>표창할 수 있다.</u></p>